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6. 3. 17.>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1. 훼손지의 생태가치

구분	평가항목
가. 일반 현황	1) 주요 생태축, 법정보호지역 등 현황 2) 훼손면적, 녹지단절 등 현황
나. 식생 현황	1) 식생 훼손 정도 2) 군락 유형, 참조생태계(생태계 복원 과정에서 목표 및 모범이 되는 표준생태계) 대비 현황 등
다. 물환경	1) 수질 상태 2) 개방수면 비율(특정 생물종의 서식을 위해 심은 식물 등이 수면의 상부를 가리지 않는 개방 정도) 등
라. 토양 환경	1) 유기물 함량 및 토양 산성도 2) 토양의 경도(단단한 정도) 등
마. 생태축 연결성	생태축 단절 현황 등
바. 야생생물 서식	1) 법정보호종 및 주요 종 출현 현황 2) 주요 종 분류군별 서식 조건 3)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출현 현황

2. 복원 필요성

구분	평가항목
가. 복원의 시급성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생태기능의 저하가 우려되거나 향후 복원이 어려워질 가능성
나. 복원 효과	복원사업 이후 자연생태계 서비스 기능 향상 및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성

3. 사업추진 여건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 나. 국공유지 비율 및 사업비 조달 계획의 적정성
- 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등 행정절차 추진의 용이성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